



# 오폐수 관련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 기준

- 본회 “운동장, 축사면적에서 제외하라”,  
환경부 “단순한 휴식과 운동을 위한 목적이면 제외” -

현행 축산폐수처리법에 따르면 사슴은 축사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축사면적에 대한 적용기준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을 빚어 사슴농가가 고발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운동장을 축사면적에 포함시킨 것이 그 요지.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에 운동장 포함 여부를 놓고 지난 3월25일 환경부로 공문을 발송, 운동장을 축사면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본회는 사슴이 생리 구조상 야생에 가까워 축사 외에 넓은 운동장을 필요로 하고 주 생산물인 녹용의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약효적 효능을 증시하는 사육형태를 취하기 위해 두당 사육장 면적이 넓다는 점을 내세워 운동장을 축사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97년 농림부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에 운동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

용의 공문을 첨부해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축사면적에서 운동장 외에도 지붕이 덮여진 면적 가운데 중앙통로는 사슴 사료 저장 및 작업용구 보관창고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이 또한 축사면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슴분뇨는 농가에서 자체 수거하여 사료작물포 및 초지,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 이를 증명할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사슴을 상주시켜 기르는 경우 운동장도 축사에 포함되나 단순한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본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지붕이 덮여진 면적 가운데 중앙통로 역시 실제로 사슴을 사육하지 않는 곳이면 축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사슴분뇨에 관해서는 이를 자체 수거하여 농지에 환원해서는 안되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정하게 발효된 퇴비의 경우 농지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97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에 농림부는 운동장을 축산폐수 배출시설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밝힌 반면 환경부는 그러한 사실을 농림부로부터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양 부서간의 유기적 업무 협조관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아래는 본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 내용 및 환경부의 답신 내용.

### ■ 본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

시행일자 : 2002. 3. 25

수 신 : 환경부장관

참 조 : 생활오수과장

제 목 :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기준 의견제출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감독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사슴농장 축사면적 적용기준 혼선으로 영세 부업농가가 고발 조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3. 특히 97년 본회가 접수한 농림부 회신내용(붙임자료, 축정 51573-434호) 중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은 운동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축사면적」이라는 환경부, 농림부 협의결과가 있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4. 붙임과 같이 본회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검토후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 1. 농림부 회신공문 사본 1부.

2.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및 건의 1부. 끝.

**한국양육협회**

주 220-097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0-14번지 생활민중문화회 2층 2205호 / 문의(2209-4009) / 팩스 2209-7120 / E-mail: korea1999@hanmail.net

문서번호 : 한국양육 02-41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성</td> <td style="width: 25%;">성</td> <td style="width: 25%;">내</td> <td style="width: 25%;">장</td> </tr> <tr> <td>성</td> <td>성</td> <td>내</td> <td>장</td> </tr> <tr> <td>성</td> <td>성</td> <td>내</td> <td>장</td> </tr> <tr> <td>성</td> <td>성</td> <td>내</td> <td>장</td> </tr> </table>	성	성	내	장	성	성	내	장	성	성	내	장	성	성	내	장
성	성	내	장														
성	성	내	장														
성	성	내	장														
성	성	내	장														
시행일자 : 2002. 3. 25	수 신 : 환경부장관																
참 조 : 생활오수과장	제 목 :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기준 의견제출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감독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사슴농장 축사면적 적용기준 혼선으로 영세 부업농가가 고발 조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3. 특히 97년 본회가 접수한 농림부 회신내용(붙임자료, 축정 51573-434호) 중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은 운동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축사면적」이라는 환경부, 농림부 협의결과가 있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4. 붙임과 같이 본회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검토후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 1. 농림부 회신공문 사본 1부.  
 2.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및 건의 1부. 끝.

**한국양육협회**  
회 장 김 은 정



## # 붙임자료 1.

시행일자 : 1997. 6. 14

수 신 : (사)한국양록협회

참 조 : 받는 곳 참조

제 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토 회신

1. 관련 : 양록축협 11702-272('97.5.23)호

한록협제 97-27('97.5.23)호

2. 상기호로 건의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부

(안)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축산폐수 배출시설(개정안 제14조, 제27조 관련)

구 분	환경부 개정초안	우리부의견	최 종 안
신고대상	면적 500㎡	삭제	삭제
간이대상	면적 150㎡이상 500㎡미만	면적 500㎡이상	면적 500㎡이상

※ 축산폐수 배출시설면적은 운동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축산면적임. 끝.

## 농 립 부 장 관

## # 붙임자료 2.

□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및 건의서

-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

### 1. 사슴사육 현황

국내 사슴사육 농가수는 2001년 말 현재 약 1만5천호이며, 사육두수는 꽃사슴 16만 2천5백두(69.3%), 레드디어 3만3천8백두(14.4%), 엘크 3만8천1백두(16.3%) 등 총 23만4천4백두임.

농가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15.6두로 매우 영세하며 5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함.

## 2. 사슴 사육장 형태

- 1)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관리의 초점을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으므로 좁은 면적의 축사(또는 케이지)에서 집약사육을 실시하고 있음.
- 2) 사슴은 주 생산물인 녹용의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약효적 효능을 중시하는 사육형태를 취해야 하므로 두당 필요로하는 사육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음.
- 3) 특히 사슴은 생리구조상 야생에 가까우므로 축사 외에 넓은 운동장을 필요로 함.
- 4) 따라서 국내 일반 사슴사육장은 지붕을 씌운 축사 밑에 사료저장 통로, 먹이통, 급수시설 등을 설치해 사슴이 상시 머물도록 하고, 가능한 한 넓은 운동장을 확보해 사슴의 도주와 도난을 막을 수 있는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5) 또한 자육 및 환축보호·격리, 사슴의 이동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슴이 상주하지 않는 예비 사육장(또는 운동장)을 대부분 갖추어 놓고 있음.

## 3. 사슴의 배설물과 처리

- 1) 사슴의 분뇨발생량은 1일 2.5kg/두(분 0.5kg, 뇨 2kg)으로 타 축종에 비해 매우 적으며, 분(糞)은 수분이 60% 이하인 입자고형체(粒子固形體)로서 매일 수거하여 농지에 퇴비로 활용하고, 뇨(尿)는 목장의 토양에 흡수되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우려는 거의 없음.
- 2) 사슴사육장의 운동장은 콘크리트가 아닌 흙이며, 두당 사육장 면적도 충분히 축사 외 운동장내 분뇨는 대부분 토양에 자연 흡수되어 폐수발생 우려가 거의 없음.
- 3) 사슴 생산물인 녹용의 판매가 대부분 농장방문 고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절각철(보통 5월~8월, 장마철과 겹침)을 전후하여 농가 스스로 사슴사육장 청결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

## 4. 사슴축사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 1) 사슴은 생리적으로 햇볕과 무더위를 싫어해 지붕이 설치된 축사내 그늘에서 주로 상주하며, 단지 아침·저녁 운동 및 무리중 힘센 사슴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해 운동장에 일시 머무르므로 지붕이 없는 운동장은 축사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 2) 사슴사육시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지붕이 씌워진 사육장 중앙에 통로를 설치하여 사료 및 작업용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축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곳을 축사로 인정하여 면적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3) 단, 이 경우 중앙 통로는 참고용도로 활용하므로 축사면적 산정시 제외되어야 함(참고는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4) 따라서, 사슴사육시설의 축사면적 산정에 있어 신고시설의 경우 도면상의 축사면적만을 적용하고 신고대상 외 농가의 경우 지붕면적을 축사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5. 사슴사육 여건 및 농가경영의 어려움

1) 사슴사육은 과거 특수계층 전유물에서 벗어나 농가소득 품목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정책의 외면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지난 92년 사슴수입 자유화 조치로 인해 국내 사슴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농가 피해가 속출한 바 있으며, 97년도 국가경제 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양육 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3) 특히 값싼 외국산 녹용 및 저질·가짜녹용 불법유통이 만연함에 따라 국내 농가의 판매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전체 녹용소비량의 80% 이상이 수입녹용으로 충당되고 있음.

4) 전체 사슴사육 농가의 95% 이상이 50두 이하 영세농가로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성상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슴사육 농가에 대한 별도의 적용기준 마련이 요구됨.

## 6. 건의사항

1)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시 실제 건축물 면적, 또는 지붕면적만을 축사에 포함시키고 울타리(철망 등)가 설치된 방목장(운동장)은 제외한다는 기존의 협의결과를 일선 행정관서에 정식 시달하여 주실 것.

2) 지붕이 씌워진 축사의 중앙통로를 사료저장 및 작업용구 보관 창고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면적으로 인정하여 축사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여 주실 것.

3)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라도 사슴분뇨는 농가에서 자체 수거하여 사료작물포 및 초지,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의 증명(생산자 단체 확인서)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 끝.



### ■ 환경부가 본회에 보내온 공문

시행일자 : 2002. 3. 28

수 신 : 김 은 성

참 조 :

제 목 :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기준 건의에 대한 회신

1. 한록협제 02-41( '02. 3.25)호와 관련입니다. 귀 협회의 건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건의요지

가. 사슴농장 축사면적 산정시 실제 건축물 면적 또는 지붕면적만을 축사에 포함시키고 울타리가 설치된 방목장(운동장)은 제외한다는 기존의 협의결과를 일선 행정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람.

나. 지붕이 덮어진 축사의 중앙통로를 사료저장장 및 작업용구 보관창고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축사면적 산정에서 제외.

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라도 사슴분뇨는 농가에서 자체 수거하여 사료작물포 및 초지,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증명할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3. 회신내용

▷ “가”에 대하여 : '97년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농림부)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에는 운동장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 운동장의 경우 사슴을 상주시켜 기르는 경우는 사육시설의 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단순히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라면 사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에 대하여 : 사육시설의 경우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에 대하여 : 사슴분뇨를 그대로 농지에 환원해서는 안되며, 신고 대상농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관련 법령에 맞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할 것이며, 적정하게 발효된 퇴비만을 농장의 비료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

